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304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0. 3. 10. 접수 제3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와 사이에 2016. 8. 29.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그에 기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C에게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자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위하여 2020. 6. 15. D 주식회사에게 87,950,5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차전3356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8. “C는 원고에게 88,301,327원과 그 중 87,896,762원에 대하여 2020. 7.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이는 2020. 10. 20.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0. 3. 10. 접수 제3921호로 그의 친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에 있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판결 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20. 6. 15.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2016. 8. 29.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날인 2020. 3. 10.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 후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C의 친누나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9. 9. 2.부터 C 또는 그의 처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20,000,000원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위 돈 합계 4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일부 현금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정당하게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0. 3. 10. 접수 제3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횡성군 답 1947㎡
2. 강원도 횡성군 답 1266㎡

- 이 상 -